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12월 2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기획재정부관 추경호

●대통령령 제34022호

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본칙 중 “별표 1, 별표 3 및 별표 4”를 “별표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하고,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)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,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.

[별표]

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
호	소호			
0301		활어		
0301	9	그 밖의 활어		
0301	92	뱀장어[앙길라(<i>Anguilla</i>)속]		
		3. 기타	실뱀장어(양식용은 제외한다)가 아닌 것	20%
0301	99	기타		
		1. 돔		
		나. 기타		28% 또는 2,052원/kg 양자 중 고액(율)
		2. 농어		
		나. 기타		28%
0303		냉동어류[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(fillet)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]		
0303	5	청어[클루페아 하렌구스(<i>Clupea harengus</i>)·클루페아 팔라시(<i>Clupea pallasii</i>)], 멸치[엔그라올리		

스(*Engraulis*)속], 정어리[사르디나 필차르두스(*Sardina pilchardus*) · 사르디노프스(*Sardinops*)속], 사르디넬라[사르디넬라(*Sardinella*)속], 브리스링(*brisling*)이나 스프랫(*sprats*)[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(*Sprattus sprattus*)], 고등어[스콸버 스콸브루스(*Scomber scombrus*) · 스콸버 오스트랄라시쿠스(*Scomber australasicus*) · 스콸버 자포니쿠스(*Scomber japonicus*)], 줄무늬 고등어(*Indian mackerels*)[라스트렐리거(*Rastrelliger*)속], 삼치[스콸버로모루스(*Scomberomorus*)속], 전갱이[트라커러스(*Trachurus*)속], 줄전갱이류[카랑크스(*Caranx*)속], 날쌔기[라키센트론 캐나다움(*Rachycentron canadum*)], 병어[팜푸스(*Pampus*)속], 풍치[콜로라비스 사이라(*Cololabis saira*)], 가라지[데카테러스(*Decapterus*)속], 열빙어[말로투스 빌로서스(*Mallotus villosus*)], 황새치[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(*Xiphias gladius*)], 점다랑어[유티너스 아피니스(*Euthynnus affinis*)], 버니토[사르다(*Sarda*)속], 새치류, 돛새치, 청새치[이스티오폴리대(*Istiophoridae*)]. 다만, 제0303.91호부터 제0303.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(屑肉)은 제외한다

		다.		
0303	59	기타	<p>뽕치[콜로라비스 사이라 (<i>Cololabis saira</i>)](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, 갈치조업 미끼용은 제외한다)</p>	24%
0303	6	<p>브레그마세로티대(<i>Bregmacerotidae</i>)과·유클리티대(<i>Euclichthyidae</i>)과·가디대(<i>Gadidae</i>)과·마크로우리대(<i>Macrouridae</i>)과·멜라노니대(<i>Melanonidae</i>)과·메르루치대(<i>Merlucciidae</i>)과·모리대(<i>Moridae</i>)과·무라에놀레피디대(<i>Muraenolepididae</i>)과의 어류. 다만, 제0303.91호부터 제0303.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(屑肉)은 제외한다.</p>		
0303	67	명태[테라그라 찰코그라마 (<i>Theragra chalcogramma</i>)]		22%
0303	69	기타	<p>명태[테라그라 찰코그라마 (<i>Theragra chalcogramma</i>)]는 제외</p>	22%

0306	<p>갑각류(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·냉장한 것·냉 동한 것·건조한 것·염장이나 염수장한 것), 훈제한 갑각류(껍 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 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, 껍데 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 거나 삶은 갑각류(냉장한 것· 냉동한 것·건조한 것·염장이 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 다)</p>	한다]	32%	
0306	9	기타	32%	
0306	95	새우류	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data-bbox="863 1352 1198 1715">1. 냉수성(冷水性) 새우 류 [판 달 러 스 (<i>Pandalus</i>)속·크란 곤 크란곤(<i>Crangon crangon</i>)](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 정한다) <li data-bbox="863 1794 1198 1939">2. 그 밖의 새우류(염장 이나 염수장한 것으 로 한정한다) 	32%

0307		연체동물(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,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·냉장한 것·냉동한 것·건조한 것·염장이나 염수장한 것), 훈제한 연체동물(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		
0307	4	갑오징어와 오징어		
0307	43	냉동한 것		
		2. 오징어		
		가. 음마스트레페스(<i>Ommastrephes</i>)속·로리고(<i>Loligo</i>)속·노토타다루스(<i>Nototodarus</i>)속·세피오투디스(<i>Sepioteuthis</i>)속	한치·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	22%
		나. 기타	한치·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	22%
0709		그 밖의 채소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
0709	5	버섯과 송로(松露)		
0709	54	표고버섯(<i>Lentinus edodes</i>)		40% 또는 1,625원/kg 양자 중

			고액(율)
0712		건조한 채소(원래 모양인 것, 절단한 것, 얇게 썬 것, 부순 것,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,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)	
0712	3	버섯, 목이버섯[오리클라리아(<i>Auricularia</i>)속], 젤리균류[트레멜라(<i>Tremella</i>)속], 송로(松露)	
0712	34	표고버섯(<i>Lentinus edodes</i>)	40% 또는 1,625원/kg 양자 중 고액(율)
1902		파스타[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(肉)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·마카로니·누들·라자니아(lasagne)·뇨키(gnocchi)·라비올리(ravioli)·카넬로니(cannelloni)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]와 쿠스쿠스(couscous)(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	
1902	1	조리하지 않은 파스타(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	

		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
1902	19	기타 2. 당면		26% 또는 206원/kg 양자 중 고액(율)
1904		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품[예: 콘 플레이크(corn flake)]과 낱알 모양·플레이크(flake)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(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·부순 알곡·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
1904	90	기타	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낱알 모양의 쌀로서 찌거나 삶은 것	50%
2103		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, 겨자의 고운 가루·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		
2103	90	기타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

			1. 고추장	32%
			2. 고추·마늘·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%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% 이상인 것	45%
4412		합판·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		
4412	3	그 밖의 합판[플라이(ply)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(sheet)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,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]		
4412	31	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열대산 목재인 것	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[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]	10%
4412	33	기타[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오리나무[알너스(<i>Alnus</i>)속]·물푸레나무[프락시너스(<i>Fraxinus</i>)속]·너도밤나무[과구스(<i>Fagus</i>)속]·자작나무[베틀라(<i>Betula</i>)속]·체리나무[프루누	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	10%

		스(<i>Prunus</i>)속] · 밤나무[카스타네아(<i>Castanea</i>)속] · 느릅나무[울무스(<i>Ulmus</i>)속] · 유칼립투스[유칼립투스(<i>Eucalyptus</i>)속] · 히커리[카르야(<i>Carya</i>)속] · 칠엽수[아에스쿨러스(<i>Aesculus</i>)속] · 라임[틸리아(<i>Tilia</i>)속] · 단풍나무[아서(<i>Acer</i>)속] · 참나무[코커스(<i>Quercus</i>)속] · 버즘나무[플라타너스(<i>Platanus</i>)속] · 포플러와 사시나무[포푸러스(<i>Populus</i>)속] · 아까시나무[로비니아(<i>Robinia</i>)속] · 백합나무[리리오덴드론(<i>Liriodendron</i>)속] 또는 호두나무[주글란스(<i>Juglans</i>)속]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]		
4412	34	기타[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소호 제4412.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]	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	10%
4412	39	기타[양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]	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	10%
4412	4	단판적층재(LVL)		
4412	41	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열대산 목재인 것	각 플라이(ply)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(sheet)	10%

			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	
4412	42	기타[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]	각 플라이(ply)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(sheet)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	10%
4412	49	기타[양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]	각 플라이(ply)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(sheet)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	10%
4412	9	기타		
4412	91	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열대산 목재인 것	각 플라이(ply)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(sheet)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	10%
4412	92	기타[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]	각 플라이(ply)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(sheet)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	10%
4412	99	기타[양쪽 외면의 플라이(ply)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]	각 플라이(ply)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(sheet)	10%

			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(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마루판은 제외한다)	
--	--	--	--	--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관세법」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,

202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